

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선박국 등의

무선종사자 자격·정원 배치기준

(제117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관련)

선박의 종류		자격별 정원	
		무선설비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육상정비체계를 갖춘 선박	무선설비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선상정비체계를 갖춘 선박
1. 국제여객선 (유선 및 도선 포함)	가. 여객 정원2	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	전파전자통신기사
	50명 이상	1명	1명
	나. 여객 정원2	전파전자통신기능사	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
	50명 미만	1명	1명
2. 어선		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	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
3. 화물선 및 그 밖의 선박		전파전자통신기능사 1명	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1명